

「평택기차~오산 제1공구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」
공 사 시 방 서

2022. 01



3-3-6 건설폐기물 계량대 운영 및 설치

1. 계량대 선정

- 1.1 계량대는 무인자동화시스템을 이용 차량 입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입, 출 차량의 중량을 정확히 계량하고 차량의 출입시간, 차량번호, 중량, 업체 등의 관련 자료를 데이터화할 수 있어야 한다.
- 1.2 계량대는 개개 차량의 입출과정을 자동 체크하며 음성안내로 차량의 통제는 물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사무실에서 모든 자료를 조회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.
- 1.3 계량대는 간단한 사용방법의 습득으로 시스템과 사용자간 손쉽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.
- 1.4 계량대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2. 제출물

- 2.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계량대의 위치, 도면, 자료 및 운영매뉴얼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관리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1.1 공급자재 명세 및 공인성적서

- 제조사 교정 장비 공인성적서
- 제품 검정 또는 교정 성적서
- 품질보증서
- 품질 공인 인증서
- 제품 및 부속자재 구비유무

2.1.2 기자재 공급 내역

2.1.3 계량대의 설치위치

2.1.4 기술 자료 및 도면

2.1.5 설치를 위한 상세한 방법, 지침 및 도면

2.1.6 제작기기 규격

- 종류 및 규격
- 도면 및 구조
- 제작기기 특기사항 및 특성
- 표준도면
- 기타 필요한 사항

3. 계량대 설치 및 운영방법

- 3.1 건설폐기물 계량대는 야적장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위치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

법률 등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.

3.2 계량대 본체는 차량의 진입 시 발생될 비틀림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
쏠림이 발생 할 시 안정되게 지지고정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3.3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계량대의 설치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
반사항을 강구한 후 계량에 임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리 부주의에 의해 계량대
파손 시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3.4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현장에 설치된 계량대를 통과하여 폐기물 반출물량을
발주처 또는 시공사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공인
계량소의 계량결과로 처리물량을 확인 할 수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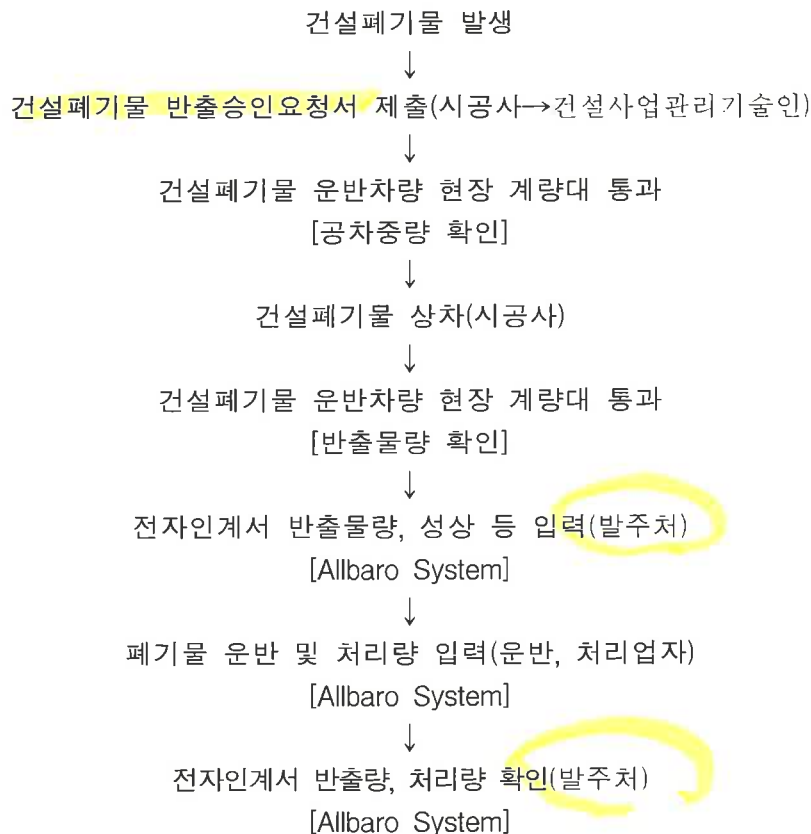
3.5 계량대 설치 및 운영비용은 운영실적에 따라 정산한다.

4. 계량대 검사기준

4.1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4.2 교정검사(수시)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
표준원장이 지정한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.

5. 건설폐기물 반출절차





기성지급(발주처)

[첨부] 폐기물 반출승인요청서 (예)

폐기물 반출 승인 요청서

공 사 명 :

시 공 사 :

반출예정일자 :

신 청 대 수 :

성 상	총 반출예정량(설계량)	반출 예정량	비 고
폐아스콘			

※ 발 생 사 유(예시) : 기존도로 배관 매설위치 터파기(폐아스콘)

※ 사진대지	※ 사진대지
1 페이지	
※ 사진대지	※ 사진대지

[시공사] 소속 : 직위 : 성명 : (인)
[KOGAS] 소속 : 직위 : 성명 : (인)